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윤상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0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8.

발 의 자 : 윤상현 · 한동훈 · 고동진
김선교 · 김민전 · 주호영
박수민 · 김석기 · 최보운
김태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대부 광고나 개인정보를 활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을 발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고, 해당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됨. 그러나 현행 방식으로는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·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,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대부 광고 및 불법 추심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금융위원회가 직접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하여 차단·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10 신설).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10(불법 대부 광고 등에 대한 조치의 요청) 금융위원회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,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위반한 광고나 이 법 또는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차단·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불법 대부광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게시되어 있는 광고 또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9조의10(불법 대부 광고 등에 대한 조치의 요청) 금융위원회 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 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, 매출액 등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자에게 제9조의2 및 제9 조의3을 위반한 광고나 이 법 또는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지 의무 를 위반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차단·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